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김남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12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6.

발 의 자 : 김남근 · 강준현 · 김승원
김 윤 · 김현정 · 민병덕
박 정 · 박정현 · 박홍배
송재봉 · 윤준병 · 이강일
이건태 · 이용우 · 임호선
진성준 · 채현일 의원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음. 또한 개인정보 유출 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음. 전자상거래 시장이 날로 성장하여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과징금 부과 체계로는 법 위반 억제력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움.

이에,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소비자 기만 행위,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, 눈속임 상술(다크패턴),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없이 곧바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현

행법의 실효성을 개선하려는 것임.(안 제34조의2 등)

한편, 현행법은 범위반 사업자인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, 회사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의 처리에 대해서는 이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과징금 부과·징수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의 합병 및 분할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39조제4항 등).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도용”을 “유출 또는 도용”으로 한다.

제34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5장에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4조의2(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)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1조제2항, 제13조제6항,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의2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정도
2.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
3.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

4. 위반행위의 내용·기간 및 횟수 등

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9조제4항 중 “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03조”를
“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0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
및 제103조”로 한다.

제46조 중 “제34조”를 “제34조 또는 제34조의2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34조의2 개정 규정은 공포
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) ①(생략)</p> <p>② 사업자는 재화 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<u>도용</u>되어 해당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 <p>제34조(과징금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<u>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사업자인 회사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1조(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 <u>유출 또는 도용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4조(과징금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제34조의2(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)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1조제2항, 제13조제6항, 제21조제1항제1호 및</u></p>

제21조의2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정도
2.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
3.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
4. 위반행위의 내용·기간 및 횟수 등

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9조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의 준용) ① ~ ③

제39조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의 준용) ① ~ ③

(생략)

④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
· 징수에 관하여는 「독점규제
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
0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
을 준용한다.

⑤ (생략)

제46조(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
의 특례) 제45조의 과태료에 관
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4조에
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
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
없다.

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 「독점규제
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
0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
103조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46조(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
의 특례) -----
----- 제34조 또
는 제34조의2-----

-----.